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2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방식	5
다. 검토의견	7
라. 관계 기관 의견	11

I. 개요

1.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2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13.
- (3) 회 부 일 : 2024. 9.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

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을 폐지하려는 것임 (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삭 제>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 -----기초연금액을----- ----- ----- ----- ----- ----- -----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	③ ----- -----기초연금액을----- ----- ----- -----

현행	개정안
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액’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우선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감액**을 각각 적용하여 조정된 ‘기초연금급여액’을 매월 받게 됨.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기준연금액’과 ‘기준연금액의 50% (부가연금액)’를 각각 상한과 하한으로 하여, 국민연금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조정됨.

< 대상 유형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



주: 2024년도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은 각각 334,810원과 167,400원임.

자료: 보건복지부

□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우선 적용된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20%씩 감액하고(부부감액),

선정기준액 전·후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되(소득역전 방지감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받는 ‘기초연금급여액’은 적어도 ‘기준연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

< 기초연금액에 대한 감액 적용 >



자료: 보건복지부

다. 점토의견

□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여져야 함.¹⁾

- 선정기준액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각각 월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원과 340만 8천원이고,²⁾

- 소득인정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소득·재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각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³⁾

□ 한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4년 현재 334,810원⁴⁾)을 상한으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는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의

1)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3)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2024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4천8백1십원으로 한다.

20%씩을 추가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운영되고 있음.⁵⁾

-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부부감액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부부감액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기초연금 수급자			계 (B)	2인 수급 부부가구 비율 (A/B)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수급	2인 수급 (A)		
2014년	2,230,885	379,477	1,743,120	4,353,482	40.0
2015년	2,306,404	375,456	1,813,323	4,495,183	40.3
2016년	2,351,026	380,302	1,850,78	4,581,406	40.4
2017년	2,457,532	140,656	2,000,388	4,868,576	41.1
2018년	2,554,409	441,480	2,129,842	5,125,731	41.6
2019년	2,653,291	454,926	2,237,511	5,345,728	41.9
2020년	2,785,665	473,626	2,400,460	5,659,751	42.4
2021년	2,912,604	495,561	2,564,894	5,973,059	42.9
2022년	3,029,979	514,425	2,694,394	6,238,798	43.2

자료: 보건복지부(2023),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 이에 개정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가구별 생활비는 가구원이 공동으로 지출하는 유형의 비용(예: 주거비) 등으로 인하여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아니한다는

5)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점에서 부부감액이 도입되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부부감액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2024) >

(단위: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1인가구 대비 감액률	-	17.4	29.5	35.7	39.9	43.0	45.4

자료: 보건복지부

< 해외 주요국의 기초연금액 부부 감액 사례 >

(단위: %)

구분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단독 대비 부부급여액 감액률	10.0	10.5	14.1	24.6	31.5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2인가구 중 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에 한하여 부부감액의 대상이 되는바,⁶⁾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구성된 2인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 甲(90세)과 아들 乙

6)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66세)로 구성된 2인가구의 경우에는 甲과 乙이 서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부부감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 같은 2인가구임에도 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에 대하여만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선정기준액의 단가가 1인가구의 경우 213만원인 반면 2인가구의 경우 인당 170만 4천원으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부부감액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⁷⁾

개정안과 같이 부부감액을 폐지하게 되었을 때에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선정기준액의 단가를 달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과 같이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

(단위: 조원, 만명, 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2.6	2.8	3.0	3.3	3.5	15.2	3.0
수급대상자	736.0	778.8	811.8	848.8	876.5	-	-
기준연금액	343,180	350,387	357,395	364,543	371,834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현행 1인가구 선정기준액(213만원) 대비 2인가구 선정기준액(340만 8천원)의 비율은 1인가구의 기초연금액과 부부감액이 적용된 2인가구의 기초연금액 간 비율인 '1:1.6'이 되도록 정하여짐.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에 따른 단독가구-부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부부 감액제도가 필요하고,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 국내 복지제도 및 해외 기초연금 운영 국가에서도 부부 감액제도를 두고 있으며,

부부 감액제도 폐지 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현행 대비 약 2.2조원 추가될 것이라는 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추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부 감액제도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